별첨 3 한국의 금융분야 현재 · 미래유보 18개

번호	성격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용
1	현재	보험	MA	1)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의 2인 이하의 직원만이 같은 시간, 장소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2)보험판매 창구 수 등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을 제한하고, 단일 보험업자에 의한 보험상품의 은행판매 비율에 대해 제한
2	현재	보험	CBT	"강제적인" 보험 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 충족 여부를 결정할 때 외국에서 공급받은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음. *해당 보험이 국내에서 구매될 수 없을 경우, 해외 보험도 고려 가능
3	현재	은행·기타	NT	1)외국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인 경우에만 한국의 상업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10% 초과 보유 가능 2)-금융위는 소유권 승인여부에 대한 추가적 승인기준 적용 -자연인은 지분 10% 초과 보유 불가 -주요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비금융기관은 지분 4% 초과 보유 불가. 단, 의결권 행사 능력 포기시 10%까지 가능
4	현재	은행·기타	NT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에 대한 개별 인가 요구조건 명시 *단, 자회사인 은행의 지점은 인가 불요
5	현재	은행·기타	MA	한국증권선물거래소만이 한국에서 증권·선물시장 운용 가능
6	현재	은행·기타	MA	증권예탁결제원만이 한국에서 발행된 상장·비상장 증권의 예탁자 또는 증권회사 계정 간 증권 이전 매개체로서 기능 가능
7	현재	은행·기타	MA	한국증권선물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만이 증권·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결제 업무 수행 가능
8	현재	은행·기타	CBT	한국 거주자·금융기관·외국기관지점은 한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역외 선물, 옵션, 특정 선도계약 체결 가능
9	현재	은행·기타	NT	1)외국은행·증권회사 지점의 영업기금 유지 의무 2)외국 지점은 그 본점과 별도의 법적 실체로 간주
10	현재	은행·기타	MA	외국금융기관 지점은 다음 업무 수행 불가 1)신용협동조합 2)상호저축은행 3)여신전문금융회사 4)종합금융회사 5)외화 및 원화자금중개회사 6)신용정보회사 7)일반펀드사무관리회사 8)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9)채권평가회사
11	현재	은행·기타	MA	국내에서 일정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관은 자회사로만 설립 가능
12	현재	은행·기타	NT	정부지원기관(산은, 기은,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에 대해 채권보증, 손실 보전, 조세 면제 등 특별대우 부여 가능
13	현재	은행·기타	SMBD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의 최고 및 차상급 경영책임자 및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한국 국민이어야 함.
14	현재	은행·기타	NT	주택청약저축계정과 같은 주택계정 보유 금융기관 수 제한 가능
15	현재	은행·기타	MA	원화 현물환거래의 은행간 중개업은 기존 두 개의 중개업자로 제한
16	미래	보험	CBT	"강제적인" 제3자 보험서비스 구매 의무 충족 여부 결정시 외국에서 공급된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을 권리 유보 *해당 보험이 국내에서 구매될 수 없을 경우, 해외 보험도 고려 가능
17	미래	은행·기타	NT	정부 소유·지배 기관을 민영화 할 경우, 계속적 보증 및 한시적 추가 보증을 채택할 포괄적 권리 유보
18	미래	은행·기타	NT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권리 유보

※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MA:시장접근, CBT:국경간 무역,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